

08_디자인 등록을 위한 등록 요건을 파악하라

#1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 패턴, 색상, 질감 등 외관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통해 디자인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보호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과 약간 다른 점으로서 '디자인 창작의 장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보호법」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더욱 세분화해서 설명하자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포함한 시각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미감을 느끼게 하며,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자인은 물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자체나 화상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 이미 공지한 디자인의 특허 등록 가능 여부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출원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경쟁 제품이 등장하면, 이러한 경쟁 제품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디자인권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디자인 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자신이 공개한 내용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출원을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공개한 내용 때문에 디자인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5

※ 디자인의 심미성

디자인의 정의 요건 중 하나는 '심미성'입니다. 정의에서는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감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심미성에 대해서 해당 물품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형태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형태가 조잡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짜임새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미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품을 제작하거나 설계할 때 대부분은 일정한 짜임새를 가진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6

※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듣거나 맛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이나 확대경을 사용하여야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시각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시각성을 평가합니다.

#7

※ 디자인의 시각성 평가 시 예외 상황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거래 상황에서 현미경이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물품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고 미세한 반도체 칩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디자인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시각적인 요소를 현미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 디자인의 등록 요건

※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을 결합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상을 다른 사람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디자인 출원을 하려는 경우, 이미 공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공지한 내용 때문에 디자인권을 얻지 못하는 억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 출원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 등록받지 못하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나 널리 알

려진 형상 등의 결합을 통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을 단순히 배치 변경하거나 조합을 하는 등의 단순히 상업적·기능적 변형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디자인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물품 디자인, 물품의 부분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그리고 화상 디자인입니다. 이어서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 물품 디자인

물품의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물품의 디자인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물품의 일부분을 새롭게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물품을 기반으로 일부분을 개선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

※ 물품의 부분 디자인

물품 디자인 중 부분디자인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기존 물품의 특정 부분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존 물품의 일부분만을 새롭게 변형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3

※ 물품의 부분디자인 보호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할 경우, 전체 물품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보호 받고자 하는 특정 부분만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해당 부분의 디자인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중 일부분은 이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해당 부분의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 더 유연한 보호 범위를 제공하여, 디자인의 일부분이라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를 가진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14

※ 부분디자인 보호의 장점

이러한 부분디자인의 장점은 디자이너와 기업이 더 많은 디자인 영역에서 창작성을 발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

※ 화상 디자인

화상 디자인의 범주에는 '물품 부분에 적용된 화면 디자인'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개념과,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물품의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주로 사용되는 현대적인 화상 디자인이 있습니다.

#16

※ 폰트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 중에는 글자체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글자체 디자인은 말 그대로 글자체를 보호하는 디자인입니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글꼴에는 숫자, 문장부호, 기호 등의 형태도 포함됩니다.

#17

※ 폰트 디자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기록 혹은 표시나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2. 공통의 특징을 지닌 형태로 만들어진 것
3. 한 벌의 글자꼴인 것

#18

※ 폰트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관련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거절결정(디)]

한편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폰트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지만,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은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폰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9

※ 판례 해석

폰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폰트 디자인의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